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System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and its Economic Effects

高承禧*

Koh, Seung-Hee

目 次

I. 프롤로그	IV. 退職給與費用의 測定
II.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的 特徵	V. 賦金型 年金制度의 會計問題
III. 退職給與負債 및 年金資產의 認識 · 測定	VI.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經濟的 効果
	VII. 맺는 말

I. 프롤로그

경제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행의 퇴직일시금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종업원퇴직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연금급부에 대한 수급권(受給權)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업원퇴직금제도의 수급권은 극히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에서 마저 「최저보전급부」에 의하여 수급권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수급 권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금수급권의 명확화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기업연금기본법이나 퇴직금보호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법적 조치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사업주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교수

(기업), 그리고 사회 등,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금의 수급권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이다. 사업주(기업)가 퇴직연금제도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이나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다. 사업주(기업)와 종업원간의 계약인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의 유연성·기동성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급부의 공평성·적정성·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보호법과 같은 공적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장점을 살리면서 결함의 시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¹⁾

원래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종업원에 대한 약속이며 기업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기업의 채무는 매기의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기업회계상의 비용에 대응하여 기업연금제도에서 각출하게 되는 것이 부금(賦金)이다. 이 부금이 연금자산으로 축적되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재원(기금)이 된다. 기업연금제도라 함은 결국 「부금→자산→급부」라는 흐름을 관리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업연금제도의 운영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통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종업원퇴직급여제도에서는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우대조치의 증거로서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를 보완·대체하는 성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평성·적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도설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며,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제도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책임을 부과하거나 지급보증제도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²⁾

이상에서 언급한 종업원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주(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그림 2-1>과 같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제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기업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논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와 사업주(기업), 그리고 종업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축으로 하여 「부금→자산→급부」라는 연금재정이 연금부채와 연금비용이라는 기업회계의 과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있어서의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회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 경제적 효

1) 久保知行,『退職給付制度、の構造改革』(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9), pp.21~22.

2) 上掲書, p. 22.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效果

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的 特徵

1. 從業員 勞動用役의 對價

일반적으로 기업의 연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한 대가(對價)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연금의 본질은 종업원이 현재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장래에 받을 연금급부와의 교환거래이며, 그 연금급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의 일부가 이연된 것(移延報酬 또는 後佛賃金)이라고 인식된다. 이와 같이 연금급부액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對價)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³⁾

첫째, 기업연금에 관하여 사업주(기업)가 지고 있는 채무는 종업원에 대한 채무이다. 실제로 종업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연금제도이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생연금기금을 예로 든다면, 종업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금이며 종업원이 연금급부를 청구하는 것도 「기금」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업주(기업)는 장래의 급부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부금(賦金)의 형태로 매기마다 기금(基金)에 대하여 각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업주(기업)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종업원에 대한 것이다. 장래의 연금급부와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교환하는 거래에 의하여, 사업주(기업)에게는 종업원에 대하여 장래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종업원에 대하여 실제로 연금급부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사업주(기업)의 의무는 이행된 것이 된다. 한 편으로 사업주(기업)는 부금을 각출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급부를 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기금으로서의 자산이 부족하면, 사업주(기업)는 추가적인 각출을 하여 그 부족 분을 메울 의무도 있다.

둘째로, 이상과 같은 사업주(기업)의 연금급부에 대한 의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데 따라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업연금을 연금의 급부와 근무용역의 교환거래로 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企業財務制度研究會 編, 『年金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99), pp. 23~24.

셋째로, 연금자산은 사업주(기업)가 장래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기본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연금자산은 사업주(기업)의 일반자산에 분리되며, 그 소유권도 사업주(기업)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금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연금자산은 종업원에 대한 연금급이라고 하는 사업주(기업)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별한 자산이다. 그리고 연금자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나 운용성과도 그 운용의 결과여하가 장래 사업주(기업)의 부금액 증감을 가져오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이러한 연금자산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그 회계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⁴⁾

2. 退職給與會計의 目的과 特徵

퇴직급부를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교환하는 기업연금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업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근무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사업주(기업)에게는 장래 연금을 급부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장래에 사업주(기업)로부터 경제적인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업주(기업)는 회계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독립형의 기업연금에서는 우선 그 때까지 적립된 연금자산이 급부에 충당되지만, 연금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업주(기업)는 그 부족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

종업원 퇴직연금이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연금도 임금(급료)이나 기타의 인건비와 똑같이,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기업)의 당기업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에 관해서도 임금(급료)과 동일하게 당기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주(기업)의 손익계산에 적절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면, 종업원퇴직연금회계의 목적은 기업연금이 사업주(기업)의 재무상태 및 업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 즉 연금급부와 근무용역의 교환거래에 의하여 사업주(기업)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회계상의 부채로서 대차 대조표일에 측정함은 물론, 당기에 새로 발생한 연금급부의 의무를 연금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업주(기업)가 지고 있는 연금급부의 의무는 장래 연금의 실제지급이 확실히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의무이다. 따라서, 종업원퇴직연금회계에서는 일정한 전제 하에 그 의무를 추정(견적)할 필요가 있다. 더구

4) 上揭書, p. 24.

5) 上揭書, p. 25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나 종업원 근무용역의 제공에서부터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기까지에는 20년 내지 30년이라는 장기간을 요하게 된다. 기업회계의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경우, 연금회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먼 장래에 실현하게 될 연금급부와 현재의 의무가 교환된다는 기업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한 전제 하에 장래의 급부의무를 추정(견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업원퇴직연금회계는 끊임없는 예측의 불확실성, 특히 장기적인 시한(期限) 속에서의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감안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

III. 退職給與負債 및 年金資產의 認識 · 測定

1. 退職給與負債의 認識 및 測定

기업회계에 있어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 대한 사업주(기업)의 급부의무를 나타내는 연금채무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서 계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부채도 회계상의 인식과 측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퇴직급여부채의 인식을 위해서는 부채의 계상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주(기업)가 지는 위험부담 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퇴직급여부채의 인식

1) 부채의 계상조건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근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부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부채라 함은 과거의 사상(事象:event)에서 발생한 특정기업의 현재의 의무이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 자원이 당해 기업으로부터 유출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⁷⁾

더욱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변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확실히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⁸⁾

6) 上揭書, p. 26

7) IASC,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 (July 1989), par. 49 (b).

8) Ibid., par. 91.

이러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대해서는 연금회계의 선진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FAS 제87호를 제정한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주(기업)가 지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제시하는 조건에 합치해야 한다.

- ① 사업주(기업)가 지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 사업주(기업)으로부터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것.
- ② 그 의무는 과거의 사상(events)에서 발생한 특정사업주(기업)의 현재 채무일 것.
- ③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 사업주(기업)으로부터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 ④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사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⁹⁾고 규정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비용으로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견적)할 수 있을 경우에 부채에 속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 계상되어온 퇴직급여충당금(충당부채)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즉, 퇴직금은 종업원이 장래에 퇴직할 경우에 지출되는 것이며, 그 지출의 원인은 종업원이 사업주(기업)에 대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한 것에서 찾게 된다.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협약 등에 의하여 노사간(勞使間)에 결정되며 사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퇴직 급여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충당부채로 계상할 요건을 찾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

2) 사업주의 위험부담 인식

퇴직급여부채에 대해서는 상술한 부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수리계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부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수리계산기법이 확립되어 있어서, 그 계산기법은 매기에 각출해야 할 부금액 등의 계산에 이용된다. 회계목적에 적합한 보험수리계산기법에 입각하여 연금채무를 확정하게 되면, 그 연금부채액은 회계상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9) 기업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2000. 8. 25), 제26조.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다.

내부적립형의 퇴직금과 외부적립형의 퇴직금이 다른 것은 종업원에 대한 급부를 누가 지급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퇴직금은 사업주(기업)로부터 직접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연금은 사업주(기업)로부터 분리·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금」에서 지급된다. 사업주(기업)는 종업원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각출해 줄뿐이다. 그래서 사업주(기업)는 「기금」에 각출해 주면 연금의 급부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기업연금 속에는 퇴직후의 급부액을 정함이 없이 각출된 부금의 운용결과에 의하여 급부액이 변동하는 제도(부금형제도)가 있다. 부금형제도라고 하면, 종업원이 받을 급부액이 보증되지 않는 한편에서, 사업주(기업)는 추가 각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운영리스크는 종업원이 지게된다. 이러한 제도라면 사업주(기업)는 각출할 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무에서 당기에 부담해야 할 부금을 전액 각출하고 있다면, 장래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부채의 조건」에는 맞지 않고 충당부채의 계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는 각출되는 부금의 운용결과에 의하지 않고 퇴직후의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액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급부액이 보증되기 때문에 기금의 운영리스크는 사업주(기업)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사업주(기업)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면, 장래 그 위험이 나타난 시점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술한 요건에 합치하며 충당부채의 계상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3) 保險數理評價方式의 問題

연금각출액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에서는 기금에 넣은 각출액이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기업)의 의무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에서는 대부분이 재정계산상의 보험수리 평가방식으로서 예측급부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측급부 평가방식에서는 종업원의 퇴직 시까지의 근무와 장래의 기급운용수입을 감안하여 매기의 부급이 일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률로 계산된다. 따라서 예측급부평가방식은 부금을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급부의 재원을 적립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부(기업)에게 있어서도 연도별 각출액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 상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사업주(기업)의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당기 이전에 발생할 근무용역까지도 계산의 기초로 포함하고 있는 예측급부평가방식은 최적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¹⁰⁾

이에 대하여 또 하나의 보험수리평가방식인 발생급부평가방식에서는 우선 급부산정식에 입각하여 당기 이전의 근무용역에 해당한 급부를 확정한 후에 그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가 당기 말의 연금채무가 되며 전기 말의 연금채무와 당기 말의 그것과의 차액이 연금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이전의 근무용역만을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급부평가방식이 회계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한다.¹¹⁾

(2) 퇴직급여부채의 测定

원래 퇴직급여부채라 함은 사업주(기업)가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급부의 현재 가치를 일컫는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퇴지급여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① 사업주(기업)가 장래 지급할 예측연금급부총액을 추정한 후에, 그것을 할인하여 퇴직시점의 급부현가액을 측정하고, ② 그 퇴직시점의 급부현가액 중에서 대차대조표 일까지의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확정하여, ③ 그 발생한 부분을 할인하여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세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 그 내용을 각각 검토하려고 한다.

1) 예측연금급부총액의 측정

기업연금제도에서는 연금급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급부산정식이 필요하다. 이 급부산정식을 기초로 하여 각 종업원의 연금급부액이 산정·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산식에 의하여 예측연금급부총액이 추정(견적)되면, 그 추정 액은 사업주(기업)와 종업원과의 계약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 연금회계에서도 이러한 급부산정식을 이용하여 예측연금급부총액을 추정하게 된다.

예측연금급부총액이라 함은 퇴직 후에 지급될 연금급부의 총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측연금급부총액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한 용역에 해당한 급부액이라 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종업원의 장래 근무용역에 대해서도 고려한 다음에 그 급부총액이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정액이 결정되면, 그 예측연금급부총액을 일정률로 할인하여 퇴직시점의 연금현가액을 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서는 연금현가액이 모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측연금급부총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일의 현시점에서 예측연금급부총액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가정 하에 그 장기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예측되는 연금급부총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10) 企業財務制度研究會, 前掲書, pp.41~42

11) 上掲書, p.42.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에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종업원 근무용역에 적합한 종업원퇴직 연금부채의 현가액이 계산되는 것이다.¹²⁾

2) 퇴직시점의 연금현가액의 기간귀속

종업원퇴직 연금부채로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사업주(기업)가 연금급부의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퇴직시점의 연금현가액중 대차대조표일 이전의 근무용역에 알맞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연금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그 다음의 작업과정이다.

기업연금회계에서는 발생급부 평가방식에 속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급부/근무년수방식)」을 이용한 보험수리평가의 작업 중에서 이 작업과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단위적립방식(급부/근무년수방식)에 의하면 과거의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적립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장래의 근무에 대해서는 전혀 적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¹³⁾

3) 대차대조표일 현재가치로의 할인계산

종업원의 근무제공에서 퇴직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에 이르기 때문에 연금부채의 측정에는 화폐의 시간적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의 시간적 개념」이라 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시간적 가치, 즉 이자지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업원 퇴직시점의 연금 현가액에는 근무용역의 제공 시부터 퇴직시점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그 이자 부분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후의 시간적 경과에 대응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인식·측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퇴직연금부채의 가치는 퇴직시점의 연금현가액 중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합당한 금액에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이자를 일정률로 할인하여 계산된다.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라 함은 이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할인계산에 이용되는 이율을 할인률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할인율도 보험수리 상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할인율을 얼마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금부채의 측정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AS No.19)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No.87)에서는 할인율의 설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즉 국제회계기준(IAS No.19)에서는 우량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No.87)에서는 청산률(연금계약에 내재하는 이율 또는 우량확정투자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⁴⁾

12) 上揭書. pp.42~43.

13) 上揭書. pp.44~45.

14) 上揭書. p.46.

(3) 퇴직급여부채의 변동

기업연금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 상의 연금부채에서 연금자산을 공제한 후의 순액을 부채로 인식·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채의 변동액이 연금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비용은 연금부채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소와 연금자산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소와 연금자산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소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그 중 연금부채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금자산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항목에서 후술할 것이다.

종업원 퇴직연금부채의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이 퇴직급여비용의 일부로서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식·측정된다.

- 1) 종업원이 당기에 새로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연금부채가 발생한다.
- 2) 시간의 경과에 수반하는 연금부채의 증가이다. 즉, 할인된 현재가치에서 표시되어 있는 당기 초의 연금부채에 관련된 이자의 발생이다.
- 3) 연금제도의 개선에 따른 연금부채의 증감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과거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응하는 급부의 증가액이 있으면, 연금부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 4) 연금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 설정된 가정(승급률·할인률 등)에 대하여 발생한 예상외의 변동(즉, 가정과 실적의 차이) 또는 그 가정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연금부채의 증감액이 존재한다.
- 5) 퇴직종업원에 대한 급부의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금부채의 감소액이다.¹⁵⁾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항목과 둘째의 항목은 모두 연금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동요인이다. 그리고 셋째항목과 넷째 항목은 연금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음을 나타내는 변동요인이다. 끝으로 다섯 번째의 항목은 연금부채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변동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회계에 있어서는 첫째항목이 「근무비용」으로, 둘째 항목이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세 번째 항목은 「과거근무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넷째 항목의 경우는 「보험수리적손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¹⁶⁾

15) IASC, "Accounting for Retirement Benefits in the Financial Statement of Enterprises(IAS NO.19, January 1983); FASB, "Employees Accounting for pension."(SFAS NO.87, December 1985); 企業財務制度研究會編,『年金會計』(1999), pp46~47.

16) 企業財務制度研究會, 前掲書, p.47.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效果

연금부채의 변동 = (근무비용+이자비용) ± 과거근무비용±보험수리적 손익
-퇴직종업원에 대한 급부의 지급

2. 年金資產의 認識 · 測定

(1) 연금자산의 인식

외부적립형의 기업연금에서는 사업주(기업)는 각출한 부금을 적립하고 그 부금과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종업원에 대한 연금급부를 수행한다. 이렇게 적립된 부금을 운영하여 종업원에게 급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금과 같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관리공단이나 일본의 후생연금기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적립된 부금」을 연금자산이라고 하여 연금부채와 함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금으로 각출된 부금은 사업주(기업)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기구나 기금이 소유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연금급부로 충당하는 것 이외의 목적에 사업주(기업)가 연금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금으로 적립된 부금을 사업주(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인식 ·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은 함께 연금자산을 인식하고 연금부채로부터 공제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으나, 연금자산을 사업주(기업)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우리나라에서 자산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국제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회계상의 이론구조 하에서는 자산은 법적인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산에 대하여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자산이라 함은 과거의 사상(events)의 결과로서 특정기업이 지배하며, 그리고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해 기업에 유입한다고 기대되는 자원을 일컫는다.』¹⁸⁾

더욱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산은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자신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원가 또는 가치를 가질 때에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된다.』¹⁹⁾

17) 上揭書, pp.47~48.

18) IASC, "Employee Benefits," (IAS NO.19, revised 1998); FASB, "Employees Accounting for pension," (December 1985).

19) IASC,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이와 같이 자산의 개념을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로 유입한다고 보아 법적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 견해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금 등에 적립된 부금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연금급부의 경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주(기업)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금의 형태로 각출된 것이다. 환언하면 그러한 부금은 원칙적으로 연금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같은 금액의 연금부채를 가진 A회사와 B회사라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A회사의 연금제도는 종업원 전체의 연금급부를 조달한 만큼의 윤택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B회사의 연금제도는 그러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대조적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A회사의 연금제도와 같은 재무상태가 B회사의 그것보다 양호하다는 것은 확실하다.²⁰⁾

이와 같이 두 개의 대조적인 재무상태의 차이는 기금에 대하여 사업주(기업)로부터 각 출될 부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A사는 이미 기금에 부금을 적립해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연금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장래의 부금을 각출하지 않더라도 기금으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부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B사의 경우는 종업원에 대한 연금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장래에 걸쳐 계획적으로 부금을 각출하고 기금에다 적립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A는 기금에 적립된 부금이 가져오는 장래의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기금으로 적립된 부금은 「장래의 경제적인 효익의 기업에의 유입」이라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게 되므로, 그 부금이 자산으로 계상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연금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인식함으로써 상술한 두 회사의 재무상태의 차이점을 맹백히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연금자산의 측정

일반적으로 기업연금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연금자산을 공정가치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식되는 연금자산의 기대수익을 측정할 경우에는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준화한 수치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재무회계기준(SFAS NO.87)은 시장관련가치로서 상기한 후자, 즉 「공정가치의 변동을 평준화한 수치」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5년 이내

(July 1989), Par.49

20) IASC, Ibid, Par.89.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效果

의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3) 연금자산의 변동

연금자산의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변동은 연금비용의 일부로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 1) 사업주(기업)의 「기금」에 대한 각출(+).
- 2) 퇴직종업원에 대한 급부의 지급(-).
- 3) 연금자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수익(+).
- 4) 기대수익과 실제수익과의 차이, 즉 이것은 가정과 실적과의 차이를 의미한다(\pm).

이상의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넷째 항목의 경우는 연금자산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가 있음을 나타내는 항목(\pm)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의 항목을 합한 것이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이다.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상기한 세 번째 항목의 기대수익을 연금비용의 구성요소로 하여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액인 네 번째 항목은 보험수리적 손익에 포함하여 처리된다. 즉, 연금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begin{aligned} \text{연금자산의 변동} &= \text{기대수익}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기대수익과 실제수익과의 차액)} \\ &\quad + \text{사업주의 각출액-퇴직종업원에 대한 급부의 지급액} \end{aligned}$$

IV. 退職給與費用의 認識 · 測定

퇴직급여비용은 기업연금제도가 지닌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복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²³⁾

- ① 종업원의 근무용역의 대가로서 당기에 획득한 연금급부.
- ② 종업원이 전기까지 획득한 급부에 대한 이자.
- ③ 연금자산으로부터의 수익.

21) 企業財務制度研究會, 前揭書, pp.49~50

22) 上揭書, p.50.

23) 上揭書, pp.50~51.

④ 기타의 요인에 의한 손익.

이들 구성요소 중에서 첫째는 근무비용, 둘째는 이자비용으로서 연금부채의 변동을 가져오며, 셋째는 연금자산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리고 넷째의 항목은 보험수리적 손익, 과거의 근무비용 및 이행시의 순부채 또는 순자산으로서 연금부채 및 연금자산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1. 退職給與費用의 測定

(1) 근무비용의 측정

기업연금회계에서 근무비용의 측정과정은 전술한 연금부채의 측정과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연금부채에서는 대차대조표 상에서 인식되는 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모든 것을 계산의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근무비용은 당기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만을 계산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를 뿐이다. 따라서 근무비용의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 ① 보험수리상의 가정을 이용하여 종업원이 장래 받을 예측연금급부총액을 추정(경적)하고 그 급부총액을 할인하여 퇴직시점의 급부현가액을 측정한다.
- ② 퇴직시점의 급부현가액을 「기금」의 급부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각기의 근무용역에 배분한다.
- ③ 당기에 배분된 급부를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표시한다.

(2) 이자비용의 측정

연금부채 및 근무비용은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이전에 인식된 연금부채에 대해서는 당기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 이자액도 역시 연금비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이자비용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²⁴⁾

$$\text{이자비용} = \text{당기초의 연금부채} \times \text{할인율}$$

(3) 자산운용수익의 측정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전기까지 적립된 연금자산으로부터 당기의 운영을 통하여 이자나

24) 上揭書, p51.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배당 등의 수익이 발생한다. 기업연금제도에서는 적립된 부금과 이 운영수익이 종업원의 급부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작용한다.

기업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기대수익률을 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당기초의 연금자산에 이 기대 수익률을 곱하여 당기의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금자산의 기대수익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산식으로 계산된 기대수익이 연금비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²⁵⁾

$$\text{연금자산의 기대수익} = \text{연금자산의 기초평가액(공정가치)} \times \text{기대수익률}$$

여기서 연금자산이라 함은 외부에서 적립되어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금자산 그 자체의 공정 가치도 매일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연금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나 배당수입과 연금자산가치의 변동이 실제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은 당기중의 현금흐름인 부금의 각출과 급부의 지급을 감감한 후의 공정가치로 환산된 연금자산의 증감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²⁶⁾

$$\begin{aligned}\text{연금자산의 실제수익률} &= \text{연금자산의 기말공정가치} - (\text{당기의 부금각출액} \\ &\quad - \text{당기의 급부지급액}) - \text{연금자산의 기초공정가치}\end{aligned}$$

연금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이러한 차액을 보험수리적 손익에 포함시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연 인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수익을 연금비용의 구성요소로 하여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액에 대해서 이연인식(移延認識)을 인정하는 이유는 실제수익을 직접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확성(volatility)을 회피하려는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실무적 편의를 고려한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2. 保險數理的 損益 및 過去勤務費用 등의 認識

(1) 보험수리적 손익의 인식

25) 上揭書, p.52.

26) 上揭書, p.52.

27) 上揭書, p.53.

기업연금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수리상의 가정에 입각하여 연금부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보험수리상의 가정과 실적의 차이를 사후에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며, 또한 보험수리상의 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많다. 전자의 예로서는 사망률이 예상외로 낮거나, 아니면 연금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적립부족이 발생하며, 연금비용 및 연금부채를 추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게된다. 그리고 후자의 예로서는 할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연금비용과 연금부채를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²⁸⁾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전기 이전에 인식된 연금부채나 연금자산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수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보험수리적 손익이며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험수리상의 가정은 연금의 급부라고 하는 먼 장래의 사실을 예측하고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그 전액을 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대차대조표일의 최신의 추정(견적)으로 설정된 사업주(기업)의 채무(부채)를 대차대조표상에서 인식하는 것이 실태를 충실히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한 기간에 그 전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수리상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차기 이후가 되면 역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상쇄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당초에 설정한 가정이 타당하다는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차기 이후로 이연시켜 서서히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⁹⁾

국제회계기준(IAS NO.19)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NO.87)은 사업주가 보험수리적 손익의 즉시 인식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이연인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연인식(移延認識)이라 함은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시켜서 서서히 인식해가는 것을 일컫는다. 결국 기업연금회계에서는 보험수리적 손익의 전부를 즉시 인식하는 것이 연금부채 및 연금자산의 변동을 충실히 표현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연방식에 의한 인식이 실무적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2) 과거근무비용의 인식

사업주(기업)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을

28) 上揭書, p.53.

29) 上揭書, pp. 53~54.

30) 上揭書, p.54.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도입이나 퇴직급여제도의 개선이 급부의 증액을 가져오고 그 증액이 종업원의 전기 이전의 근무에도 소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전기 이전에 인식된 연금부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의 수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거근무비용이다. 과거근무비용의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연금회계상 연금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은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높이므로써 사업주(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기대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과거근무비용의 전액을 즉시에 인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이연인식에 의한 방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³¹⁾

(3) 年金財政과 年金會計

기업연금제도의 재정계산은 가입자에 대한 최종적인 급부를 추정(견적)하고 이것을 기금에의 쟁출과 그 운용수입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사업주(기업)가 쟁출하고 적립할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재정계산의 목적은 연금급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있어서 수입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으며, 거기서는 사업주의 재무적 요구, 기금의 재정상태 및 연금운영에 관한 법적인 조건 등이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기업)는 매년 변동이 심한 쟁출내용보다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쟁출내용을 선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업주(기업)에게 있어서 자금계획을 수립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연금회계는 연금정보의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용한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서는 기업의 자원 및 그에 대한 청구권의 상황을 밝히는 대차대조표와 매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연금에 준거하여 살펴보면 연금회계는 연금급부에 관련된 사업주(기업)의 채무나 매기의 수익에 대응시킬 연금비용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함으로써, 연금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회계상의 연금채무나 연금비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장래의 연금급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장래의 연금급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회계도 재정계산도 공통적이며 그 계산절차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금회계실무에 있어서도 재무회계기준(SFAS No. 87)을 설정할 때 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계산방식의 일정한 제약은 있었을지라도 재정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금(原資)에의 쟁출액을 매기의 연금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용인되어 왔다.³²⁾

31) 上揭書, p.54.

그러나 재정계산과 회계에서는 한 쪽이 기금적립을 위한 계획책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다른 한 쪽은 연금정보의 이용자에게 대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연금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재정계산의 결과가 회계상이 요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필연성은 개재되어 있지 않다. 재정계산의 결과를 회계상의 비용이나 채무의 인식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의 방식을 회계목적에 비추어 다시 평가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연금의 재정계산에서 이용되는 수리계산방식을 연금회계에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크게 예측급부평가방식과 발생급부평가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연금급부총액을 매기에 배분하기 위한 배분방식이며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종적인 연금비용과 그것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적립해야 될 자산은 동일하다³³⁾

발생급부평가방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재정방식으로서는 단위적립방식이 있다. 종업원이 일년간 근무하면, 장래의 연금급부액은 그에 수반하여 증가한다. 그 증가액을 장래 조달할 수 있도록 일년분을 적립한다. 역으로는 당기에 각출한 금액을 급부시까지 운용하면, 당기에 발생한 장래의 급부액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단위적립방식의 기본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예측급부평가방식으로 분류되는 재정방식에서는 우선 장래에 필요하게 되는 급부액을 예측하고, 다음에 그 총액을 적립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평준적인 부금을 산출한다. 매기의 부금액은 일정액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매기급여의 일정률이 되도록 산출된다.

연금재정의 실무에서는 사업주(기업)에게 평준적인 각출을 가능하게 하는 예측급부평가방식으로서의 재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업연금회계상의 연금채무나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도 전에는 예측급부평가방식이 용인되어 왔다고 한다. 예측급부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연금비용이나 연금채무는 기업연금회계상의 부채와 비용의 측면에서 보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No.87)으로부터 1998년에 개정된 국제회계기준(IAS NO. 19)까지에 이르는 국제적인 흐름은 연금회계상 이용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발생급부평가방식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업회계심의회가 공표한 「퇴직급부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도 이들의 국제적인 연금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연금채무나 연금비용의 측정을 발생급부평가방식에 따라 행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32) 企業財務制度研究會, 『年金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91), p. 26.

33) 上揭書, p. 27.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效果

이와 같이 연금재정방식과 기업연금회계는 상호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호보안적 관계를 통하여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연금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연금에 관한 회계제도의 정비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V. 從業員退職給與制度의 經濟的 效果

기업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기업연금제도의 종합적인 기능을 평가할 때 기본축을 이룬다.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바람직한 제도적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책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주(기업)와 종업원이 중심이 되는 기업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로서 국민저축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절세수단으로서의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1. 勞動市場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연금제도는 종업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연금은 노동의욕과 생산성, 노동력의 유동성, 퇴직연령(조기화 및 지연화)과 임금조정 및 성별·세대별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퇴직자들의 실질소득과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가 퇴직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므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그들로 하여금 여가를 즐기고 선용하게 되어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종업원의 조기은퇴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노동력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효력도 갖고 있다. 한편 기업연금제도가 연금급부에 가입한 종업원들의 부(富)를 증대시킬 것인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종업원이 퇴직시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가 정년퇴직 후 지급받을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보다 적을 경우에 이 제도는 그 종업원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가 소비한 여가선용의 정도는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가 연금급여액의

34) 上揭書, p. 28.

현재가치보다 크다면 역으로 노동시간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게 된다.³⁵⁾

그리고 기업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비가입종업원 보다도 전직률이 훨씬 낮다고 한다. 미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종업원이 같은 기업에 5년간 근속할 확률은 연금적용자의 경우에는 비적용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미국의 인구동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서의 평균근속년수는 남성의 경우에 기업연금 비적용자가 약 7년인데 비하여 연금적용자가 약 14년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기업연금 비적용자가 약 6년인데 비하여 연금적용자는 약 11년정도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금제도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종업원의 임금이나 급료를 후불함으로써, 하나의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려는 노동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환언하면, 기업연금제도의 채용기업은 노동의욕을 북돋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용임금」, 즉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보수(임금 또는 급료)를 지급할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업연금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현재의 고용관계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인 보수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가 세대별소득을 재분배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일이다. 기업연금에서도 연금비용은 종업원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 또는 근속년수별 그룹사이에서 재분배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분배가 보수 이외의 부분에서 상쇄될 수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이 기업연금은 성별로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연금제도가 노동력의 이용을 저하시키고 조기퇴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고령자의 재취업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연금제도는 단기근속자를 희생시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적 입안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⁷⁾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인에게 있어서나 연금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35) 全瑛俊·韓道淑,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向』(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7), p.22.

36) OECD, "Private Pensions and Public Policy", (1997) : 厚生年金基金連合會譯, 『企業年金改革』(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7), p. 158.

37) 上揭書, pp. 160-166.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서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에 관련된 것으로는 (1) 저축률에 대한 기업연금의 영향, (2) 기업연금제도를 통한 퇴직저축의 투자 효용성, (3) 기업연금자산관리자에의 재량권 집중 등의 세 가지가 있다.

(1) 기업연금과 저축

기업연금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저축의 증가분에서 연금부금의 과세공제로 인한 공적저축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연금수급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금의 부과 방식보다도 사전적립방식이 좋을 수 있다. 사전적립의 연금제도가 저축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경제적 생산력은 커지게 된다. 경제국제화의 지구촌 시대에 세계 자본시장의 일체화(—體化)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저축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대외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해외의 생산물에 대한 국내 청구권의 증가는 연금수급권의 보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은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것이다. 각 개인은 기업연금의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전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저축에 관해서는 과세후의 수익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에 의한 저축에서의 고수익률은 개인저축의 규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³⁸⁾ 왜냐하면 소득효과에 따라 각 개인은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어느 기간에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현시점의 저축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에 대체효과에 의하여 각 개인은 현재보다도 퇴직 후에 보다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소비는 장래의 소비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의 저축은 증가하게 된다. 환언하면, 각 개인은 퇴직후의 목표소비수준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기금(原資)을 보다 낮은 저축에 의하여 준비할 수 있으나, 저축에 대한 고수익률은 퇴직후의 소비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퇴직저축의 투자효용성

각 개인이 기업연금제도를 통하여 노후의 퇴직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저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제도의 존재에 의하여, 퇴직저축은 한층 「기관투자화」(機關投資化)로 이어진다. 기업연금기금과 개인투자가가 서로 다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기관투자화는 기업연금이 자본시장에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관투자화된 연금저축은 임의의 개인저축과 비교하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38) Munnell, Alicia, "The Economics of Private Pensions", (Washington, D.C., Bookings Institution, 1982) : 여기서 말하는 기업연금에 의한 저축은 개인이 최후에 저축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저축 1달라마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產業研究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이 개인투자가 보다도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된다는 가정에서 보면, 기관투자화에 의한 투자효용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연금자산관리의 재량권집중

기업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의 주식은 점차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기금은 대리 경쟁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기업연금기금의 자산관리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연금자산 관리자에게 대규모화된 연금자산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연금기금의 관리자는 기업연금제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있다. 이 때 기업연금기금이 기업경영을 개선하고 그 결과로 주가상승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연금기금의 관리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바람직한 연금자산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節稅手段으로서의 企業年金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의 부금(賦金)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그 운용수익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상의 규정에 따라 기업연금의 제공자는 연금적립금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기 전의 운용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우대제도 하에서는 기업연금의 제공자에 대하여 과세적 측면에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작용하게 된다.

기업연금제도의 세제상의 규정에 대하여 금융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즉, 첫째로 기업연금은 완전히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기업연금적립금은 세계상 가장 불리한 취급을 받는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두 개의 명제는 반드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연금에서는 최대한의 초과적립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자산이 채권에만 투자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⁹⁾

기업연금이 완전적립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연금기금의 각출기업이 연금자산에 대하여 명확한 청구권을 가졌다라는 가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비과세의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금각출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공제 가능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사채의 발행은 주주에 대하여 과세상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기업연금의 적립금은 과세상

39) 上揭書, pp.167-168.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가장 불리한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그것은 주주가 기업연금의 자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자산의 과세전 수익에는 과세투자가의 불이익을 보상하려는 자산수익에 의한 세금초과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VI. 맷는 말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각국의 공통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나 의료제도를 어떻게 재편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선진제국에 있어서도 최대의 과제로 등장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경제적 선진제국의 출생률 저하는 지금까지 공적 연금제도가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던 세대간의 소득재분배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역시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는 사적연금(私的年金), 그 중에서도 기업연금의 비중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의 경제와 고령화 사회의 시대에 대응하여 연금제도나 의료제도에 관련된 비용이 증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비용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문제인 만큼, 늘어나는 퇴직급여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 것인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을 종업원 쪽에서 보면,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액의 이연(移延)인 연금액이며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연금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도 종업원 퇴직급여의 현상이 장래 기업의 업적이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업은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기업은 연금제도를 통하여 보유하는 자산의 투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기업은 연금에 관련된 회계처리나 공시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종업원퇴직급여에 관한 회계의 제도적 정비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기업연금회계인 것이다.

産業研究

1980년대에 경제적 선진제국의 퇴직급여회계에 대한 과제는 기업연금제도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pension fund)과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장래에 지급되는 연금은 종업원 급여의 이연(移延)이므로 종업원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연금지급액은 기업의 부채로서 보게된다. 이 경우에 연금기금의 회계문제는 기업회계에 통합하여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기업회계 내에서 연금기금회계의 고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연금수급자의 수급권보호를 기업회계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⁰⁾

- (1) 노동채무로서의 연금부채(年金負債)
- (2) 기업자본으로서의 연금자산(年金資產)
- (3) 기업의 인건비로서의 연금비용(年金費用)

이 세가지 요소를 기업 쪽에서 보면 장래에 지급되는 총액은 노동채무인 부채이며, 각 출된 자산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장래 각출액의 인하와 기업의 업적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자본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기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총액은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금이 보장되도록 연금자산의 운용을 바라는 바의 적립금이며 장래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업이 매기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서의 연금비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를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연관시켜 보면, 현실적으로 연금기금회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대변의 연금부채액은 차변의 자산에 대한 종업원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연금기금의 조달원천이며 연금자산의 운용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 내에 연금기금을 통합시키는 관점은 기업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기금을 기업자본의 일환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견해는 회계와 재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조업원퇴직급여에 관한 회계문제가 기업연금회계로서 통합되어 기업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석, 『기업연금의 설계와 운영』(서울, 삶과 꿈, 1999).

40) 今福愛志, 『企業年金會計の國際比較』(東京, 中央經濟社, 1996), pp. 5-6.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効果

- 고광수·김영갑, 『미국의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한국증권연구원, 2000).
고승희, 『회계원칙의 이론』(서울, 수서원, 1983)
김상운, 『기업회계기준해설』(서울, 회경사, 1998).
김용하,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2000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회 토론 자료집, 2000. 1.18).
김인기,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대한투자신탁경제연구소, 1991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회계제도의 도입과제』(보험학회지, 제53집, 한국보험학회).
_____, 『연금회계제도의 적용과 기업연금의 위험관리』(『리스크관리연구』 제10집, 1998).
손성동, 『기업연금회계에 관한 연구』(삼성금융연구소, 1999).
전춘옥,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坪野剛司, 『轉換期の企業年金制度』(東京, きょうせい, 1995).
久保知行, 『退職給付制度の構造改革』(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9).
多賀谷充, 『退職給付會計基準』(東京, 稅務研究會出版局, 2000).
大和總研, 『IAS退職給付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99).
大口修, 『退職給付制度』(東京, 近代セールス社, 2001).
高承禧, 『韓國會計原則の展開』(ソウル, 檀大出版部, 1987)
中央青山監査法人, 『退職給付會計の實務』(東京, 中央經濟社, 2000).
Accounting Standards Board, "Pension Costs in the Employer's Financial Statements"(Discussion paper),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 Limited, 1995.
Andrews, E. S., "Private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OECD, 1993
Archbald T. Ross, "Accounting for Pension Costs and Liabilities : A Reconciliation of Accounting and Funding Practic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1980).
Baker, Roy E., Accounting for Pension Costs : A Historical Survey, dissertation, Harvard Univ., 1962.
Collard Rosalind M., "Pension Accounting Evolution," (CA Magazine, April 1986).
FASB,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SFAS No. 35, 1980).
_____,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SFAS No. 87, December

産業研究

- 1985).
- _____. "Employers' Accounting for Settlements and Curtailme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nd for Termination Benefits (SFAS No. 88, December 1985).
- _____. "Employers' Accounting for Postretirement Benefits other than Pensions (SFAS No. 106, December 1990).
- FASB, "Employers' Disclosure about Pensions and other Postretirement Benefits-An Amendment of SFAS No. 87, No. 106." (SFAS No. 132, February 1998).
- Fenton J. (et al), "Tolley's Pensions Handbook, (2nd ed., Tolley Publishing Co., 1995).
- IASC, "Retirement Benefit Costs". (IAS No.19, revised 1993).
- _____. "Retirement Benefit and other Employee Benefit Costs," (Issues Paper, August 1995.)
- _____. "Employee Benefits," (revised February 1998).
- Logue, Dennis E., "Managing Corporate Pension Plans, (Harper Business, 1991).
- Morgan, Peter and Robin Arnold, "The New UK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 Costs-SSAP 24 Compared with FAS 87 and FAS 88," (Benefits & Compensation International, August 1988).
- Norman, H. Godwin and Kim G. Key, "An Overview of Cash Balance Pension Plans," (Journal of Pension Planning and Compliance, Vol. 26, Iss. 2, Summer 2000).
- World Bank,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the Crossroads," (draft report, Oct. 1999).

ABSTRACT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System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and its Economic Effects

Koh, Seung-Hee

This paper is to approach to the accounting for employees' retirement pension and its economic effects in business society. Pension costs for defined benefits plan and defined contribution plan should be accounted for on the accrual basis, and the entire cost applicable to an accounting period must be provided. The annual pension costs would not be necessarily the same as the amount to be funded for the accounting year.

The pension liabilities assumed by business enterprises are different from the same pension liabilities assumed by other business enterprises. In the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the business enterprises assum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defined benefits in this employees' pension system.

So, the amount to be described in the balance sheet as an accrued liabilities or a prepaid expenses are usu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provisions and the amounts paid. unamortized prior employees' service costs should appear in the balance sheet of the accounting year. The economic effect of the employees' pension institution is such magnitude as to be a material consideration in evaluating manager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

Keywords : Accounting for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economeic effects, Pension liability, Pension costs, Accrual basis, Managerial performence, Employees' service costs.

